

특허청,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개정

특허청(청장 김종갑)에서는 기존의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보완·발전시키고 심사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개정하였다. 그간 인터넷,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한 개정안에 대한 여론수렴을 토대로 새롭게 만들어진 최종 개정안으로 최근 급변하는 특허계의 흐름을 좇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 개정은 비즈니스 관련 발명을 포함한 컴퓨터 관련 발명 대한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 최근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보급으로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출원이 광고, 유통, 금융 등 서비스 분야에 급증함으로써 특허권에 익숙하지 않은 관련 업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와 같은 비즈니스 관련 발명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개정된 심사기준은 특허 요건과 명세서 기재 요건을 명확하게 설명한 것이 특징. 특히 이번 심사기준은 컴퓨터 관련 발명이 특허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발명일 것' 요건을 명확하게 설명했다. 또한 진보성 요건, 특허청구범위 기재 요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 요건 등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비즈니스 관련 발명이 활발하게 출원되고 있는데, 시의(時宜)에 적합하게 이번 심사기준이 마련되어, 발명자, 출원인, 변리사, 심사관, 심판관 등에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확정된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의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다.

'항공우주기술 특허연구회' 홈페이지 개통

지난해 11월 출범한 '항공우주기술 특허연구회'가 회원간의 정보교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의 홈페이지 'http://www.kipo.go.kr/aerospace'를 제작, 개통시켜 운영 중이다.

이 홈페이지는 항공우주 분야에 관련된 내용 및 특허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도 게재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이 대화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접속 방법 :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우측 하단의 '우리청연구회 홈페이지'를 클릭 후, '항공우주기술 특허연구회'를 클릭하거나, 특허청 홈페이지의 상단메뉴 커뮤니티 > 우리청 연구회 클릭 후 연구회 버튼의 '항공우주기술 특허연구회'를 클릭.

경제부처 첫 1급 여성 기관장 탄생



경제 부처에서는 처음으로 여성 1급 기관장이 탄생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4월 20일 특허청 특허심판원 김혜원 심판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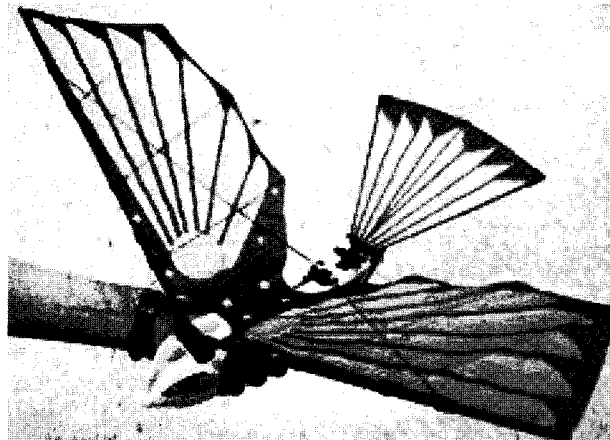
을 산자부 산하 기술표준원 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중앙 부처를 통틀어 여성 1급은 임선희 청소년보호위원장, 김영임 튀니지 대사, 김진숙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 등 3명 뿐이다. 김 신임원장은 '78년 특허청에 5급으로 특

채되어 27년 동안 특허심사 및 심판업무를 맡아왔다. '99년 특허심판원 심판장이 된 뒤 의약·화학·생명공학 분야의 특허분쟁을 처리하면서 특허법원과 대법원 소송에서 100%에 가까운 승소율을 기록해 '동방불패'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87년 한·미간 특허분쟁으로 떠들썩했던 고혈압 치료제 '캡토프릴' 소송에서 이긴 것도 김 원장의 공적 중 하나. 당시 보령제약이 '캡토프릴'을 자체 개발하자 미국 시퀴브사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특허분쟁으로 비화됐었다. 그러나 국제소송에서 김 원장이 이끈 한국 측이 승소했다.

진짜 새처럼 나는 로봇새 나왔다

완구업체 스카이택인 터 내 새 날 (대표 박운용)은 움직이는 날개의 펄럭거리는 날갯짓으로 하늘을 나는 무선 조종 로봇새 (제품명 싸이버드)를 내놓았다. 박운용 대표는



날갯짓만으로 하늘을 나는 로봇새 '싸이버드'는 휴대폰용 배터리를 통한 전동 날갯짓만으로 초당 3~6미터를 날 수 있다.

'그간 무선 조종 비행체는 날개가 고정된 비행기 형태였다'며 '싸이버드는 날개를 펄럭이는 새 형태로 색다른 즐거움을 준다'고 소개했다.

비행시 새가 쫓아다닐 정도로 실제 새와 같은 느낌을 주며 2채널의 무선 조종을 통해 비행속도·방향·고도를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충전 배터리만으로 움직여 별도 연료가 필

요 없어 경제적이며 비행 속도가 느리고 안정적이라 안전하며 한번 충전시 18분 비행하며 소음이 작은 편인 것도 특징.

동력이 없을 때는 일반 글라이더 처럼 글라이

딩을 시킬 수 있으며 4.5m/s 이하 풍속에서 조종 비행을 즐길 수 있다.

디자인이 우수하고 색상이 다양한 편이고, 비행 속도가 느려 인체에 부딪쳐도 안전하며 배우기 쉬워 무선조종 경험이 없는 초보자도 즐길 수 있다. 진짜 새처럼 나는 싸이버드는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와 실용신안을 출원 등록해 기술력을 인정 받았고 유럽 안전규격을 취득해 안전성도 검증 받았다.

특허심판 처리기간 6개월로 짧아져

특허심판원은 현재 12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특허심판 처리기간을 오는 2006년 12월 말까지 6개월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심판원은 최근 몇년간 특허분쟁 건수가 많은 특허·실용신안분야 심판관 수를 8명 늘릴 예정이다. 또 특허무효심판 등 당사자간 권리분쟁을 다루는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키로 했는데 이는 특허권리를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특허권리자의 사업화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다.

또한 특허심판을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도록 심판청구서, 심결문을 작성할 때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대신 쉬운 한국어로 된 '심결문 용어순화 편람'도 제작, 보급키로 했다.

최근 특허분쟁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 5년간 연평균 22.5%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특허·실용신안 분야가 전년도 대비 21.5% 증가(5천5백90건)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심판시스템은 개선되지 않아 심판기간은 늘어난 실정으로 지난 2000년에는 평균 10개월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2개월로 2개월 길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특허심판원의 계획은 특허 권리자들의 사업화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알아 두세요!

'샌들' 제대로 고르는 요령

초여름 더위가 시작되면서 가볍고 시원한 여름 샌들로 바뀐 여성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개성만 생각하고 샌들을 고르면 발에 무리는 물론, 티눈 등 트러블이 생기게 마련. 제대로 샌들을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발에 무리를 주는 디자인은 피하도록

여름철 발 건강의 '최대의 적'은 뒤꿈치를 받쳐주는 끈 없이 발 앞쪽에 얽은 끈 줄 하나로 디자인 된 샌들이다. 발 앞쪽에 얽은 끈 한 줄로 된 샌들은 신발과 발을 밀착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걸을 때 발 앞쪽에 힘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서 발가락에 무리가 갈 수 있으며 지나치게 얇고 높은 굽의 샌들도 발목이나 척추에 무리를 줄 수 있다. 그것은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 발 앞부분이 아프고 발목에 무리가 가거나 발목을 삐끗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발에 좋은 샌들은 굽 높이가 3cm를 넘지 않고 앞부분이 뽕족하지 않은 것. 또 적당한 쿠션이 있어 충격을 흡수해주며 발등 부분을 완전히 감싸주는 것이 좋다. 디자인에 따라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 높고 좁은 굽의 신발을 오래 신을 경우, 무게가 발목 부분에 집중적으로 가해져 발목과 허리에 무리를 주게 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장시간 발을 피곤하게 할 경우에는 편두통까지 일으킬 수 있다. 또 통굽 신발 역시 발목에 무리를 주기 쉽다고 전한다. 통굽은 발을 편하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하이힐 샌들과 마찬가지로 발을 피곤하게 할 수 있다.

발을 압박하는 장식은 피해야...

여성들은 건강을 고려해 신발을 고르기도는 디자인을 우선해 구입하는 경향이 있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샌들을 고른다면 건강과 멋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발등을 덮고 있는 부분이 넓을수록 편안하고 바닥 밀착이 너무 얇지 않은 제품이 발에 좋으며 발에 살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발을 압박하는 장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여름 샌들을 보다 편안하게 신기 위해서는 땀이 많은 경우 스크립·후 베이비 파우더를 바르고 발이 미끄럽지 않도록 스타킹은 신지 않는 것이 좋다.